

수신 : 국회의장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입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 **공동청원단체 (단체 대표자명 생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실직노숙자대책을위한종교시민단체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보통합연대회의

전국불교운동연합

참여연대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참가단체**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도시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개의원 : 김 홍 신**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외 25개 사회단체
건명	『國民基礎生活保護法』 제정 청원
소개년월일	1998년 7월 23일

### 소개의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심각한 대량실업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 안에 편입되지 못하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총26개의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입법안입니다.
2. IMF체제-저성장·대량실업의 경제상황하에서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영세사업장의 실직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빈민을 망라하는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3. 향후 '구조조정 상황에서의 대량실업에 따른 소득기회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구매력 저하 - 내수 시장의 위축 - 투자 부족 - 자본축적의 부족 - 저생산 - 저소득 및 실업의 양산'이라는 빈곤의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4. 따라서 현 상황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인 보호'에서 '빈곤'에 처한 국민이라면 국가가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이상 65세미만자들의 장기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업부조'의 성격을 포함한 생활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장기적인 저성장고실업사회에 진입하게 된 한국사회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26개의 사회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며, 이 의견의 취지에 공감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입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입법화되어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홍신

# 청원서

청원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입법청원

첨부 : 청원안 3부

1998년 7월 23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외 25개 사회단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 청원안

## I. 생활보장법 제의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들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기초생활의 최저선을 공공적인 차원에서 보장하는 공공부조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일제의 유물인 조선구호령에 의지하여 오다가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생활보호법이 법률 913호로 제정되었다. 당시 생활보호법은 생계보호만을 불완전하게 실시하다가 1969년에 가서야 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부격차가 사회문제화되고 복지국가 건설이 주창되어 웠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 법개정, 1997년 법개정과정을 거쳤으나 아직도 '구빈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 II. 고실업-저성장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당위성

IMF체제는 장기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근로소득 이외에 공적인 사회보장체계가 낙후하여 실직과 동시에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곧바로 생계의 곤란에 직면하는 사회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영세사업장의 실직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빈민을 망라한 본격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구조조정 상황에서의 소득기회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구매력 저하 - 내수 시장의 위축 - 투자 부족 - 자본축적의 부족 - 저생산 - 저소득 및 실업의 양산'이라는 빈곤의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

특히, 현행 생활보호법상의 특정 인구학적 범주 - 18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에 국한된 예외적인 보호장치로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활동능력을 갖고 있는 상당수 국민이 비자발적 실업자로 전락하여 '빈곤의 문제'에 직면한 오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고실업시대의 실업부조로서의 생활보호제도' 문제를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부담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하여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 상황은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 비현실적인 보호'에서

'빈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이상 65세미만자들의 장기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업부조'의 성격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하여야 하는 실업대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절대적 생존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표하는 각종 정책들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입법청원을 제출하고자 한다.

### III 주요골자

1.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현행 생활보호법은 아무리 빈곤하여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 선정방식을 '빈곤선 (최저생계비) 아래로 떨어지는 모든 국민'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한다.

2.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 생계 - 최저생계비에 입각해 소득의 차액만큼 생계보조비 지급
- 주거 - 임대료 보조 및 융자 실시
- 의료 - 의료보호제도 확대
- 자녀교육 - 고등학생까지 학비면제, 학용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